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512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08. 23.

발의의원: 이진환, 김영실, 이수련,

김지훈(국), 김지훈(민), 이상기

김상수, 박경원, 이경숙,

하송연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며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권 발행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2, 제25조3)
- 나.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 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조)
- 라.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규정함. (안 제29조)
- 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
- 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의2)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주차요금 징수 등)"을 "(주차요금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차권의 발행 등) ①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따라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구 분하여 발행하되,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근무하기 위해 해당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 2. 시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입주한 단체 임직원
- 3.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 내 사업장 등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월정기 주차 요금은 월정기 주차권 발행 시 징수하며,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 1.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전보,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관리자는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의3(월정기 주차 요금의 감면 등) 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월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승하거나 차량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월정기 주차 요금의 50%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본문 중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주간(오전"을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으로 한다.
-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을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으로,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차장 내 질서를 무란하게 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1일 주차요금란의 "5,000원"을 "7,000원"으로 하고,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를 "「남양주시 주 차장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일 주차요금란의 "5,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개정 2021. 2. 18.. 2022. 4. 7., 2023.5.11., 2023.11.09., 2024.8.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주차장	급지구분	1구획당 주차요금		1일 주차	월 정기 주차요금		
		기본 30분	30분 초과 10분마다	요급	주간	야간	주야간
노 상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_
주차장	2급지	500원	15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
노 외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100,000원
주차장	2급지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80,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20,000원	20,000원	30,000원

- 1.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며, 공영주차장의 1일 단위시간 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 나.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3. 주간 시간은 08:00 ~ 20:00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급지 구분

급지구분	지 역
1급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2급지	1급지 외의 지역

6. 주차요금의 감면

기 대 기 H	크 마 에 기			
감면구분 	감면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외교사절 공무 관련 자동차			
전액면제	나.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 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60%감면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 탑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최초 2시간	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면제 이후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			
	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			
	는 경우에 한함)			
	가.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록			
50%감면	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			
00707급 년	시하는 경우)			
	' ' - ' ' ' '			
	나.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			

감면구분	감면대상
	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65세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
	라. 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마.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
	(市長)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
	나 고객의 자동차
	바.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사. 승용차부제(또는 요일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표지 부착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가.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
	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나.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
	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는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기타	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
	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까지 주차요금 면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까지 면제 가능)
	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
	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

[비고]

- 1.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 2.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

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5조제1항 관련)

1. 주차요금표

가. 공공청사, 공공시설 중 공공문화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1회	주차			
구분	최초 입차 후	무료 이후	1일 주차	월정기권	비고
	1시간	10분마다			
주차요금	무료	200원	5,000원	30,000원	

나. 그 밖의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 공공공원시설 등)

	1회	주차			비고
구분	최초 입차 후	무료 이후	1일 주차	월정기권	
	1시간	10분마다			
주차요금	무료	200원	7,000원	30,000원	

2. 주차요금 감면

감면구분	감면대상
전액면제	가. 시 소속 공용자동차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및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마.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바.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사.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이.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 탑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
	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E00/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해당 증서를
50%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감면	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자가 탑승한 자동차
	아. 남양주시 거주자로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
	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주민등
	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가. 주민자치센터 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
기타	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 강좌시간
	에 30분을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4시간)

※ 비 고

- 1. 다산지금지구 근린공원 1호 [어울누리 근린공원, (다산동 6114)], 다산체육공원(다산동 6138), 한강시민공원[도농지구(다산동 4325), 수석지구(수석동 442), 삼패지구(삼패동 630)] 부설주차장은 전일 유료로 운영한다.
- 2.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주차한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1일 주차를 허용하는 공공 부설주차장에 한함)
- 3. 시설의 용도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의 1일 주차나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휴일, 주말 및 특정 기간에는 1일 주차나 월정기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기간의 주차 제한은 월정기권 발급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1일 주차요금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4.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청사 부설주

차장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25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 제25조(주차요금 징수) ① (현행 략) 과 같음)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에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무료로 운 영하거나 주차요금을 면제, 감 면 징수할 수 있으며, 면제, 감 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준 용한다. <신 설> 제25조의2(주차권의 발행 등) ①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 자의 이용 시간에 따라 무료 주 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 차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공 공 부설주차장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근무하기 위해 해당 공공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 으며,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

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 2. 시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입 주한 단체 임직원
- 3.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 내 사업장 등에서 상주하여 근무 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월정기 주차 요금은 월정기 주차권 발행 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 한다.
- 1.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전보,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관리자는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발 행하는 경우 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 제26조(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 영시간)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 일과 토요일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 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 서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자 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

제25조의3(월정기 주차 요금의 감 면 등) ① 제25조의2제2항에 따 른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승하거나 차 량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월정기 주차 요금의 50% 감면할 수 있 다. ②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이용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시간) ---------- <u>토</u>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 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월요 일부터 금요일 오전 -----제27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27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 영 제11조 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다)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을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공공 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2. (생략) <u><신 설></u>

3. (생략)

	<u>에는 이동 안내문</u>
	<u>부착할 수 있</u>
	<u>다</u> .
	②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
	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 • 2. (현행과 같음)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
	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
	<u>۴</u>
	<u>~</u> 4 (현행 제3호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25조의3(월정기 주차 요금의 감면 등) ① 제25조의2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영유아를 동승하거나 차량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월정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별표1] 6. 주차요금의 감면

감면구	감면대상
분	선턴네경
최초	
2시간	마.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
면제	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이후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50%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의 자동차
감면	

○ [별표 1의2] 2. 주차요금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25조의3, [별표 1의2] 2. 주차요금 감면

- 기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가 폐지(2024.8.1.자)되고, 시행규칙 폐지예정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 [별표1] 6. 주차요금 감면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 다자녀가정의 차량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연	간(추정치)		예상 김	면금액
구 분	감면 건수	감면금 액	감면 건수	감면금 액 (A)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적용 시	총 감면 (B=A+ C)	추가혜 택* (C)
2024년 (1월~ 7월)	5,440	10,463, 400	9,324	17,937, 252	→	33,321, 852	15,384, 600
* 2시간 이상 주차 시 차량별 주차요금 1,650원 추가 감면							

2시간 이상 주자 시 자당별 주자요금 1,650원 주가 삼면 (2시간 주차요금: 일반 3,300원)

→ 추가혜택: 9,324건 × 1,650원 = 15,384,600원

□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기존 50% → 2시간 면제 후 50%)에 따라 연 약15,384천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붙임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16. 1. 19., 2024. 1. 9.>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 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 2. 4., 2024. 1. 9.>
-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 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 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